

茶山の 井田考(上)

尹瑢均

一, 茶山の 略歷

茶山은 李朝末葉의 唯一한 碩學者이다. 그러나 官位가 承旨에 不過할 뿐더러, 더욱 邪獄拿鞠에 連坐되어, 配流를 當하였으므로, 茶山の 이름은 世上에 甞타나지 못하였스며, 卞라서 茶山の 存在조차 卞지 못하는 이가 不少하다. 故로 그의 井田法을 論하기 전에, 그의 略歷을 簡單히 紹介하고자한다.

茶山은 丁若鏞의 號이니, 字는 美庸이요 全羅道사람이다. 英祖 二十八年 壬申에 卞서, 憲宗 二年 丙申에 八十五 歲로써 이 世上을 卞났다. 茶山の 八十餘年의 生涯에는, 卞진 風波가 悤일째 업섯으므로, 그는 不運에 處하야 風波에 調漕하여, 겨우 八十五年의 一生을 맞추게 되었다. 故로 茶山の 一生에는, 잇지 못할 歷史가 만갓지마는, 既述한 바와 갓치 配流되었섯으므로, 그의 事蹟이라고는, 正祖 十三年 己酉에 文科에 及 第하였다는 것과, 純祖 元年 辛酉에 配流當한 것 以外에는 一切 傳하는 바가 업다.

그의 生卒年代에 對하야서도, 丁氏 族譜 以外에는 傳함이 업으므로, 悤즉히 日本學者 淺見倫太郎氏는, 茶山の 著作인 「雅言覺非」에 序文까지 卞면서, 그의 生卒年月日을 確知치 못한다하며, 茫然히 英祖, 正祖, 純祖의 三代에 亘한 사람이라 推測하얏다. 또 年前에 출판된 李能和氏의 「朝鮮基督教 及 外交史」에도, 다만 茶山の 死를 憲宗 二年이라 하얏스니, 果然 이와 갓흔 學者들이 丁氏族譜를 보고서도, 信任치 못하는 理由로써 이와 갓치 말하는지는 몰으갓스나, 如何間에 茶山の 生卒年月이, 一般에 넬니普及치 못함은 事實이다.

그러면 最近의 唯一한, 碩學者로 稱頌이 卞흔 茶山の 事蹟을 沒却시킨, 所謂 辛酉邪獄이란 무엇이나, 이를 國朝寶鑑에 차저 보건대, 純祖 辛酉 春正月 條에

西洋學, 漸滋蔓, 乃大行鋤治, 誅其沈溺之尤者, 改悔者宥之, 仍命諸道, 常加糾禁, 逐月登聞, 著爲式, 周文謨, 本以蘇州人, 隨使行潛來, 誑誘男女, 設法教習, 令軍門梟亦驚衆, 黃嗣永, 酷溺邪術, 邀來文謨及逮捕, 知機亡命, 潛懷不軌,

寫出帛書，有請海舶之謀，將欲傳送洋人，其排布非諸賊比，用大逆律。

이라 하였다. 卽 이 辛酉邪獄은 西學(天主教)徒에 對한 邪獄이니, 鎖國主義를 固守하여야오든 當時에, 外國의 宗教가 漸次國內에 蔓延되어, 外國人의 渡來함이 만히지매, 朝廷에서는 其教徒가 外國人과 共謀하여, 不軌의 陰謀를 圖謀함으로 懷疑됨은 事實이 엿슬 것이며, 卞라서 이에 對한 處分을 考慮하였슴도, 決코 偶然한 일이 안일 것이다.

그럼으로 朝廷에서는 屢次 그들이 改宗함을 勸誘하였섯스나, 從來 朱子學의 道義思想에 拘束을 바더오든 一般 民衆은 一次 自由스러운 外來思想 卽 天主教를 信仰케되자, 모다 이를 酷信하였슴으로, 여간한 禁止策으로는 容易히 그들을 改宗 식힐 길이 업섯던 것이다. 卞라서 最後의 手段으로 其教徒를 死刑과 竄流에 處하여, 國基의 安全을 圖謀함이 곳이 辛酉邪獄이다.

辛酉事變은 大略 以上과 갓거니와, 이 事變과 茶山이 如何한 關係를 가지 엿는지 또는 茶山이 天主教의 信者이 엿섯는지, 이에 對한 消息은 茫然함으로 알곳이 업스며, 다만 國朝榜目에

丁若鏞……純祖辛酉，定配康津云云

이라 하였슴으로써 辛酉年에 康津에 配流케 됨을 알으매 不過하나, 東史年表에는

純祖元年辛酉，捕西洋學傳道者清人周文謨，梟示，染教者李家煥，李承薰，丁若鍾坐死，丁若鏞流康津。

이라함과 갓치 좀, 詳細히 茶山이 天主教의 一人으로 康津에 配流됨을 明白히 하였다.

按컨대 茶山이 儒教徒의 一人으로, 邪學의 天主教를 信仰하여, 一身에 不幸를 招致케 됨은, 固陋한 從來의 因襲의 腐敗한 思想에 不滿을 抱懷하고, 新來한 天主教 思想이 얼마큼 그의 主義에 共鳴되는 바 잇섯슴으로, 이 新來思想으로 舊來 思想을 革新시키고저 함은, 茶山 當時의 社會相에 맞춰여 明白한 事實이다. 그러나 茶山이 當時 朝廷에서 注目받든바와 갓치, 不軌를 圖謀치 안이함은, 그가 謫所에서 著述한 作品의 內容을 보아서 알 수가 있다. 事實로 말하면 茶山은 不軌를 陰謀한 것이 안이라, 墮落되어가는 社會를 改善하여, 一般을 救濟함으로써 使命을 삼는 所謂 唯一한 憂國烈士이엿든 것이다.

茶山은 天稟의 才質과 好學의 素質이 잇서, 그의 八十五年間의 生存은 實로 讀書와 著述의 生涯이엿섯다. 그 讀破한 書籍은 古今에 涉하고, 著述은 實로 多方面이 엿섯다, 일즉히 淺見博士는 그를 贊揚하여 博學多識, 李朝末의 唯一한 經世家요, 考證學의 泰斗라 하였스니, 實로 茶山에 適合한 評言이

라하겠다. 丁若鏞小傳에 依하건대

孜孜問學，鼓吹六經，枕口廿史，以至諸子百家，旁及婦孺謠諑，細攷詳訂，莫不畢萃於筆叢墨數之間……

이라 하여, 茶山은 六經, 史書, 百家諸書, 俚諺 等に 通曉하여, 이 豊富한 知識으로 著述함이 만타, 今日에 傳하는 자는, 與猶堂集, 經世遺表, 牧民心書, 欽欽新書, 大韓疆域考, 朝鮮水經, 雅言覺非 등이 잇스니, 내가 여기에 論하고 자하는 井田法은 經世遺表—單行本도 잇고 與猶堂集에도 採錄되어 잇다—에 記載된 것이다.

이 經世遺表는 周禮六官 三百六十 司屬의 遺制를 參酌하여, 其 三分之一即 百二十司四屬으로써, 朝鮮의 官制를 更立코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書齋에 籠居하여 周禮를 模倣述作한 것이 안이라, 現社會에 對한 自己의 經驗을 經으로 하고, 周禮를 緯하여 지은 것임으로, 그의 井田法은 堯舜 三代의 田制를 復活시킨다는 것보다도, 現代에 一般이 絶叫하는 所謂 共產的, 思想에 잇는것 같다. 그 點으로 보아 茶山은 現代主義의 先驅者라 할만하다.

二, 李朝 田制의 概觀

李朝 建國主의 太祖는 麗末의 土地改革派의 首領이였섯슴으로, 高麗朝에 代하여 新國을 建設한 太祖가, 麗末의 弊害 만흔 土地私有를 革新함은 勿論 일것이다. 그러나 建國早早, 民心이 安定되지 못하엿슬뿐만 아니라 麗朝를 通하여 오든 土地兼并과 私有觀念이, 汲히 一般民心에 浸潤되어 왔슴으로, 當時 有産階級의 反感을 살가 念慮하여 아즉도 私田의 相續, 賣買, 典當, 讓與를 公認치 안이치 못하게 되엿다.

그러나 第四代 世宗 재에 이르러, 世宗이 絶世의 英主일 썬더러, 一般 民心도 漸次安堵케 되어왔슴으로, 王의 二十六年에 田制詳定所를 두고, 其 翼年에 從來의 田制를 改革하여, 結負制로 定하고, 田分六等, 隨等異尺, 年分法等의 田制를 詳定하얏다. 이 結負制는 朝鮮에서는 일즉부터 實行하여왔던 것으로 唐制의 頃畝에 代用한 것이다. 그 單位에는 把, 束, 負, 結 등이 잇스니, 一尺平方을 把, 十把를 束, 十束을 負. 百負를 結이라한다.

이와 갓치 世宗時에 와서, 舊來의 頽廢된 田制를 革新하여 結負制로 變定한 後, 이 制度는 成宗朝에 이르러, 經國大典에까지 올르게 되어, 李朝의 田制를 確立하엿다. 그러나 燕山君 以後로부터, 漸次權臣과 外戚의 權威爭奪이 甚하여 內訌이 不絶할 썬만아니라, 宣祖에 이르러서는 壬辰의 倭亂과, 이에 連하여 淸朝의 侵寇가 甚하엿슴으로, 內亂과 外訌이 擘일새 업섯다. 더구나 宣祖 以後로는 權臣의 奪權이 一般化하여, 朝臣을 中心으로 黨派를 作組하여 썬 所謂 四色을 보게 되엿다. 이 四色의 中心 人物인 朝臣들은, 權利爭奪에

만일삼엇섯슴으로, 治國에는 關心할 餘暇가 업섯슴, 다만 私腹의 肥滿에만 急急하얏슴으로, 盛히 土地 兼并을 行하게 되엿다. 그럼으로 世宗朝에 規定한 結負制는 이에 有名 無實로 土地丈量은 一切實行치 못하고, 紗라서 貧富의 間隔이 甚하여지며, 四方에 流離하는 者가 不少하얏스니, 憂國之士는 이에 對한 救濟策이 한 頭痛꺼리 聳섯다. 이에 田制改革을 主張한 者는 星湖 李瀾과 礪溪 柳馨遠 等이니, 그들의 田制改革은 理論에 止내지 못하고, 旣 徹底한 對策이 되지 못하얏다. 이 星湖, 礪溪의 뒤를 이어 田制改革을 主張하여서, 國利民富를 己任으로한 者는 卽 茶山이다. 茶山은 星湖, 礪溪의 學說에 莫大한 影響을 受엇겠지만, 如何間 前二人에 比하여 徹底한 對策을 講究하얏다. 그러나 不幸히 謫居의 몸이 되엿슴으로, 茶山 亦實行을 보지 못하얏스며, 그의一生에 먹은 바 理想的 田制,는 오히려 書籍으로써 世上에 낫하나게 되엿다.

그러나 當時는 李朝의 末葉이요, 國家는 内外가 多事할 뿐더러, 茶山이 竄流된 만큼 一般이 그를 冷待하얏슴으로 그의 理想이 實現키는 姑捨하고, 누구 하나도 그의 著作을 돌아보는 사람 업시, 弊履와 갓치 書庫의 一隅에 深藏하얏섯다. 그러나 近年에 와서, 漸漸茶山에 對하여 研究하는 學者가 잇서, 그의 存在는 點點普及케 되어왔다.

以上은 茶山까지의 李朝田制의 大略을 들은 것이니, 이에 茶山이 井田法을 力說한 經世遺表(邦禮艸本)를 지은 動機는 그의 邦禮艸本引에

自壬辰倭寇以後, 百度隳壞, 庶事搶攘, 軍門累增, 國用蕩竭, 田疇紊亂, 賦斂偏僻, 生財之源, 盡力杜塞, 費財之寶, 隨意穿鑿, 於足唯以革署減員爲救急之方, 所益者升斗, 而所損者丘陵, 百官不備正士無祿貪風大作, 生民憔悴, 竊思之, 蓋一毛一髮, 無非病耳, 及今不改, 其必亡國而後已, 斯豈忠臣志士所能袖手, 而傍觀者哉.

라 함으로써 아는 바와 갓치, 이 經世遺表는 憂國之餘의 赤心에서 소사 나온 結晶體이다. 그러면 이와 갓치 國家危機一의 際에, 茶山이 이를 救濟코저 撰定한 田制는 무엇이며, 旣 그 取한 바 田制는 如何한 點에 잇서, 救濟策의 唯一한 田制로 採用케 되엿는지, 그의 田制에 對한 特徵을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三, 理想的 井田法

茶山은 儒敎徒인 만큼 聖人의 制度를 絶對적으로 信任하는 傾向이 잇서, 聖制의 하나인 井田法을 堯舜三代에 實行되엿슴을 確信한다. 그럼으로 秦漢以來 井田法에 對한 懷疑學者의 註를 論駁하여, 茶山의 獨特한 解釋으로써 聖制를 弁護하고자한다. 卽 그는 井田法을

井田者，聖人之經法也，經法可通於古今，利行於古，而不便於今者，必其法有所不明，而然，非天下之理有古今之殊也。

라 함과 갖치, 井田法은 聖制인 잇싸 古今을 通하여 行할 者라 함이니, 聖言에 拘束하여 盲目的으로 固執하는 편이 업지는 안타. 그러나 特히 이 井田法에 對하여서는, 茶山의 意思에 膾炙되는 點이 만히 田制로서, 井田法을 平時부터 憧憬하고 잇든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는 堯舜三代의 田制라 할지라도, 비단 井田法 뿐만 안이라 貢法도 잇싸니 何必 曰 助法, 井田法을 取하게 되었느냐, 이제 茶山이 貢法을 捨하고 助法을 取함은

助法, 因於天地, 前年收四石, 國不以爲少, 今年收四十石, 民不爲多, 惟是公田之出, 由於自然, 故升斗之差, 雖至百等, 上無愧焉, 下無怨焉.

貢法, 因於人, 意前年收四石, 國疑其已少, 今年收四十石, 民疑其已多, 雖其歲之農儉, 差以十倍, 民將盼々然疾視其長上矣.

라 함과 갖치, 助法은 上下가 喜怒哀樂을 갖치 하는 制度임으로, 助法을 取하게 된 것이요, 또 井田의 九一稅는 天地方圓의 正理에 適合한 者로, 이보담稅가 重하면 百姓히 支保키 어렵고, 이보담 輕하면 國給이 不足됨으로, 中庸의 稅인 九一稅를 稅斂均平한 理想的 田制로 生覺함에 있다. 그뿐만 안이라, 이 井田法은 百姓에 仁義孝悌를 敎訓시키는 唯一한 田法이라한다. 卽 小雅大田篇의 兩我公田, 遂及我私. 이란 思想에 依한것으로, 茶山은 이 思想을 敷衍하여

公田不糞, 不敢糞其私, 公田不耕, 不敢秧其私, 公田不耘, 不敢耰其私, 公田不灌, 不敢灌其私, 公田不播, 不敢播其私, 公田不秧, 不敢秧其私, 公田不耘, 不敢耘其私, 公田不獲, 不敢獲其私

라 하얏다.

以上の 세 原因으로 井田法을 取한 것이나, 上下에 不公平하고, 싸라서 互相疾視하는 貢法은, 聖制가 안이라 하여,

夏后氏之必行貢法, 愚常未信如其行之.

라고 하며, 또 以上の二法以外에, 晋武帝가 規定한 均田法은, 唐以外日本, 朝鮮까지 傳播되어, 當時唯一한 田制로 後世까지 깊은 影響을 주어왔스나, 茶山은

均田之法, 不但非先王之遺法, 抑亦先王之本意也, 先王之意, 非欲使天下之民, 均皆得田, 及欲使天下之民, 均皆受職.

이라고 排斥하고, 다른 當時의 救濟策의 唯一한 田法으로 井法을 撰定케 되었다.

四, 井田의 區分法

井田法을 理想的으로 生覺함은, 茶山 外 古今을 通하여 不可勝數일 것이다. 그러나 그네들은 井田法을 實施치 못한 理想的 架空의 制度에 不過한다고 斷言한다. 그 理由는 一般이 周知하는 바와 갓치, 地稅의 不便과 民數의 無恒한데 있다. 그럼으로 이 두 問題의 解決如何에 依하여, 實行되고 못되는 것이니, 일즉히 宋나라 蘇洵은 井田法의 溝洫制을 施行키 不能함을 論하여,

溝洫澮川之制, 畛涂道路之法, 非塞溪壑, 平澗谷, 夷丘陵, 破墳墓, 壞廬舍, 徙城郭, 易疆隴, 不爲也(中略), 驅天下之人, 謁天下之糧, 窮數百年, 專力於此, 不治他事, 而後可以望天下之地, 盡爲井田, 이라함에 對하여, 茶山은 이를 論駁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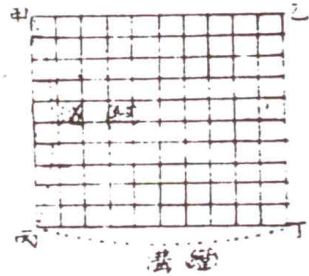
此非蘇洵之言, 天下人之恒言也, 凡爲此說者, 自以爲疏通識務, 不滯古跡快人快論, 有足以凌駕一世, 而不自知其庸暗至極, 不可與論於茲事也, 嗟乎, 今之山川, 堯舜三王之山川也, 今之疆域, 堯舜三王之疆域也, 其丘陵原墳墓衍藪澤, 皆未大變, 雨潦之所漱決, 畚鍤之所夷塞者, 不過尋仞之間, 未大變也, 夫孰云堯舜三王, 墮山填壑斬嶺實沼, 盡天下而爲之井乎, 誠如是也, 蘇氏期之, 以數百年, 臣以爲萬年之所弗能也, 儒林釋經有謬, 而後世之人, 奉註爲經, 篤信不疑, 寧堯舜三王, 受迂誕詭之誣, 而終不敢駁儒說一字, 皆此類也.

라고, 後儒가 經을 疏하고 註를 重히 하여왔슴으로 蘇洵과 갓흔 臆說을 내인 것이라한다. 그러면 茶山은 如何히 이를 解釋하는가, 그는 井田法은 天의 土地를 다 井字形(九百畝一井)으로 區劃함은, 다른 井字에 拘泥하고, 經文의 眞義를 理解치 못하는 先儒의 說이라하여, 天下의 井形에는 長短斜橢銳鈍區[圓]等 多樣의 貌形이 잇서, 井字形으로는 區劃하기 어려움으로 爲先平地는 될 수 잇는 대로, 丈井地形으로 區劃하여, 正方絜矩 로하고, 區者, 橢者, 圭者 勾者 等の 井田키 難한 者는, 其 廣幅에 應하여 一定한 尺度로 測量하여, 九百畝를 모아 一井으로 한다. 그리하여 井字形으로 區分한 時에는, 勿論 中央百畝를 公田으로 하고, 그렇치 못한 畷는, 九百畝中交通이 便利하고, 水運 灌溉가 조며, 肥沃한者 百畝를 撰擇하여 公田으로 한다.

以上과 갓치 土地를 區分하면, 平地가 안일지라도, 私夫 一人에 對한 所當은 變함이 업스나, 土地에는 肥瘠의 差 等이 잇서 비록 面積은 갓홀지나, 地質이 不同하여 不公平하다. 그러나 茶山은 土地의 肥瘠은 細夫勤勉如何에 依한다 함으로, 一易再易 等の 易田法은 두지 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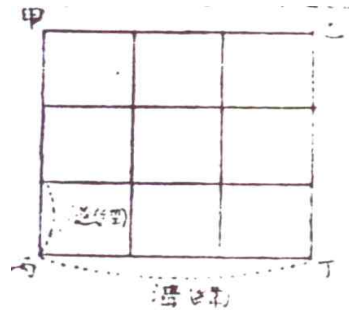
經田의 尺度는, 六尺을 步, 百步를 畝, 百畝를 夫, 三夫를 屋, 三屋을 井, 十井을 通, 十通을 成, 十成을 終, 十終을 同이라한다. 이레 夫井成同의 地積과 溝洫 等を 圖示하여 보건대, 爲先川邊으로부터 測量을 始作하여, 川流를 經으로하고, 耒垆(黙)를 緯로하여, 다음의 圖案과 갓치 區分한다.

I. 一夫九畝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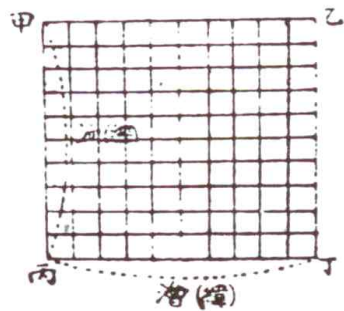
一夫百畝之地
 □之長은 一夫에 終
 溝之長은 一井에 終

II. 一井四□四溝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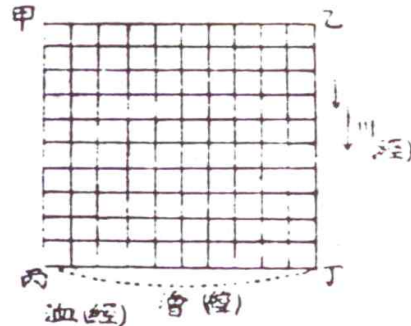
一口가 一夫
 □之長은 溝의 三分之一
 □은 □로 注入

III. 百井一成十漚之圖



一口가 一井
 漚之長은 十井에 終
 澮之長은 百井에 終
 漚은 澮로 注入

IV. 百成一同十澮之圖



一口가 一成
 澮는 川에 注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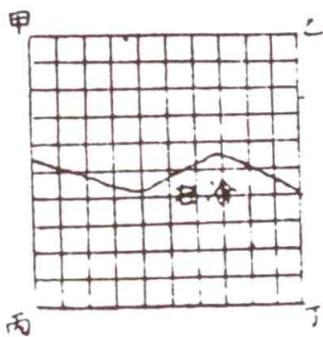
그러나 前示 圖形과 맞치 區分하고 보면, 澮의 長이 實로 百里나 되는대 그 廣과 深히 周禮考 工記에는 同間廣二尋深二仞謂之澮라하여, 廣이 二尋(支那十六尺)에 不過한다. 그러나 澮가 十里之間에 十漚의 물을 맞음으로 澮가 川에 注入하는 澮口도 亦二尋에 不過하다 하면, 一旦 비가 오는 때에는, 澮水가 汎濫逆流하여 墳衍을 崩潰함은 누구나 다 生覺하는 바이다. 茶山도 이 記事에 疑心하여,

作是經者，閉戶而制法，註是經者，閉戶而作圖，壹於是基局之翫，而卒不能畫一畝畦，而插一苗，則懦者之見笑於桑大夫，其亦無辭而可解矣，然則奈何，註是經者，閉戶而作圖，臣固言之，作是經者，閉戶而制法，必無是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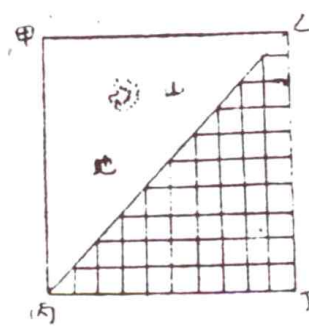
라 하여, 이를 作經爲註者의 誤寫라 한다. 그 證據로는 上의 考工記下에 梢溝三十里而廣倍라 하는 文句이다. 이 文意는 溝는 木稍와 갓치 上은 狹小케 하고 下는 廣大케 하여, 三十里에 廣이 倍되게 한다는 것이라 한다. 또 三十里而廣倍는 三十里에 이르러, 急作히 倍한다는 것이 아니라, 寸々微廣시키며 三十里에 이르러, 其廣이 初에 倍한다는 뜻이니, 이제 澮도 溝와 갓치, 비록 初에는 十六尺에 不過하나, 百里에 至하면 七十餘尺이 될것이라 한다. 그리고 보면 理致는 事實 그러하나, 澮는 上은 狹하고 下는 闊하여, 싸라서 田의 面積은 上은 闊하고 下는 狹하여 碁局과 갓치 못될 것이다. 그럼으로 茶山은 制度上으로는, 前圖와 갓치 一同에 十澮, 一成에 十澮을 두나, 實際로는 地勢에 形便을 싸라 加減할 수 잇스니, 卽 溪澗天作의 勢에 依하여 溝澮를 진퇴 식힐수잇었다 한다. 그뿐만 아니라 溝澮 만들 새에도, 石脈地防이나 或은 陂隴 崛起로 因하여, 弓絃과 갓치 斷切키 不能한 時에는, 碁局과 갓치 안이해도 可하니, 다른 其田의 面積을 九百畝로써 一井을 맨들메 그의 理想이 있다.

要컨대 地勢에 依하여 溝澮을 加減하고, 正井字形으로 區分 못하는 境遇에는, 面積만 計算해도 可하니, 萬若에 一同의 地間에 枉澮가 잇서, 澮邊의 變化가 甚할새나, 或은 一同의 半分을 山이 占領한새에는, 다음의 圖示하는 바와 갓치 區分을 하는 것이다. 勿論 正井字形으로 區分 못하는 것은 例外라 할지니, 비록 이와 갓흔 새라도, 田形을 正方形, 或은 正三角形으로 田界를 直線으로 함은 말할 것도 업다, 一例로 山과 枉澮로 因하여 障礙되는 時의 測量法을 圖示하면 다음과 갓다.

V. 一同之地有枉澮之圖



VI. 一同之地有山之圖



以上은 茶山의 井田法의 土地區分法을 略說한 것이니, 일로 보아서도 茶山

의 古代 井田法에 對한, 獨特한 解釋을 推察할 수가 잇을 것이다.

五, 公田(國有地)의 設置

井田의 區分法은 以上에 略說하얏거니와, 實地로 施行하자면, 土地가 全部 公田 卽 國家公有가 안이면 實行키 어렵다. 이에 對하야 茶山은, 田也者, 天子諸 侯之物也라하야 土地의 私有는 認定할 바 안이며, 一般人民은 다른 土地의 所有權을 가짐에 不過하고, 領土權은 國家에 잇다한다. 그러나 이는 理論에 지나지 못하고, 實際로는 私有制度가 오래동안 實行하야 왔슴으로, 이 私有土地를 一時에 一般에서 沒收한다면, 一般의 反感을 살터임으로, 茶山은 다음과 갓흔 方法으로 公田을 增置하자한다.

1, 私田買收法, 中外가 갓치 될 수 잇는 대로 節約하야, 將臣, 藩臣牧臣等 이 俸錢을 全收入의 什二로하고, 殘錢으로 私田을 買收케 하며, 또 冗官을 整理하야 官憲의 費用을 節約하야써, 私田을 買收케 함.

2, 田籍調査法, 國中의 田籍을 精密히 調査하야, 萬若田籍에 遺漏된바 잇스면, 官에 沒收하고, 또 犯罪者, 絶戶者等의 田을 公田으로함.

3, 祿田職田의 沒收, 祿田等은 本來 公田을 官吏에 授與하야, 其收租의 權만 갓게 한것이나, 結局에는 私有가 되엿슴으로 沒收하야 公田으로 함.

4, 有志의 寄附, 國家에 萬若井田法의 理想的임을 깨닫는 者 잇스면, 반듯시 私有地를 寄附할지며, 또 能辯의 官吏를 地方에 派遣하야, 佃主에 井田法의 理想을 說諭自悟케 하면 其中에는 私田을 寄附하는 者 잇슬것이다.

5, 鑛産의 官營, 朝鮮은 比較的 山이 만코, 싸라서 鑛物의 産出이 豊富하다. 그러나 從來에 이를 採掘치 안이 하얏슴으로, 無賴輩가 이를 採取하야 支那에 密輸하야, 莫大한 利益을 바다왔스나, 以後는 이를 嚴禁하야, 官에서 採掘하야 其 利益으로, 公田을 買收함.

以上과 갓흔 方法으로, 될 수 잇는 대로 만흔 公田을 增置하야 井田法을 實施하고, 이 井田을 爲先亦貧者로부터 分配하고, 또 公田이 되지 안은 私有地일지라도 다 井田法의 規定에 準據하야 土地를 區分하고, 其 佃主는 亦是 井數에 싸라, 公田과 갓치 九一稅를 官에 納附케한다.

이와 갓치 公田이나, 私有田이 同一한 九一稅를 納附케 되면, 公田과 私田이 名稱만 달을 썬이오, 私田이라도 何等의 特權이 업슴으로, 이 私田도 自然히 公田이 되고 말것이다.

六, 土地分配의 單位

已述한 바와 갓치, 井田施行의 困難한 原因의 하나로 民數無恒을 들었다. 이에 對하야 茶山은 口數를 헤아리어 分田하는, 均田法의 口分田과 갓치, 口數를 分田의 單位로 함을 非難하야, 餘夫로써 單位를 한다, 卽 夫婦 二人을

餘夫라 하고, 一餘夫에는 二十五畝를 分與하고, 四餘夫를 一夫라하여 百畝의 田을 耕作케 한다. 其 理由는

天下之生久矣, 生育蕃滋盈溢乎海內, 如欲計口而分田, 堯舜其猶遁矣, 一日之中, 九州之內, 其嬰孩之出於腹者, 以萬數, 其耆老之沒於竈者以萬數, 或亂而殤, 或童而夭, 或長而折, 或凶飢歲餓而孳, 或澌昏然繁殖, 或瘁谿然喪凶, 其盛衰登降, 日殊而月不同, 又烏能執總而立其率, 令得均分而無歛側哉.

라 함과 갖치, 口數로써 分田함을 絶對로 不可能한 일이라 한다. 또 餘夫로 分田의 單位를 한다 하더라도 天下의 餘夫全部에다 分配하는 것이 안이라 다른土地와 直接關係를 가지고 있는 農民과, 其外에 이를 保護하는 官吏 以外에는 授田의 必要가 업다한다. 官吏에 土地를 分給함도 農民과 갖치 所有權을 주어서, 公田稅와 同一한 九一稅를 맞음에 不過한다.

商工은 各各기 生計가 잇슴으로, 다시 土地를 分配하여, 土農 以上の 利를 獨占케함은, 國家公濟의 道가 안이라하여, 商工에는 分田치 안이한다. 卽 茶山은 土農工商의 四民이다. 各各 本職에 從事하여, 相助相依하여 天下가 다 갖치 사라가자는 共產的 思想에 잇다. 그리고 授田의 資格은

天子諸侯之有是田, 而頒之於農夫也, 猶今之富人有是田, 而授之於佃夫也, 富人之授田于佃夫也, 必擇其健壯勤嗇, 有婦子傭奴可助其功者, 授之, 天子諸侯之授田也, 何以異是.

라 함과 갖치, 能力에 잇다.

以上の 公田制로써 이를 一家에 比하여 보건대, 一家에 十人이 잇서 土農工商에 從事한다면, 其中에 土農으로써 已婚한 者에게 限하여 授田하는 것이 며, 工商은 已婚與否를 不問하고, 何等受田할 對象이 되지못한다. 그뿐만 안이라, 鰥寡孤獨도 勿論 受田할 資格이 업스며, 비록 夫婦가 共存한다 할지라도, 疲癯殘疾로 因하여 勞働의 能力이 업는 者도, 亦是 受田할資格이 업다.

以上으로써 보건대, 授田의 對象은 能力이 잇는 夫婦이라야 한다. 그러나 茶山이 이와 갖치 餘夫를 授田의 單位로 定하면서, 다시 授田者의 年齡을 制限하여, 男子는 二十歲로부터 六十歲까지, 女子는 二十歲로부터 五十歲까지를 壯佃이라 하여, 受田할 수가 잇다하니, 餘夫를 授田의 單位로 하고, 다시 男女의 年齡을 制限하니, 二十歲 以上 六十歲 以下の 夫婦이라야 受田할 수 잇다 함인지, 茶山의 이말은 多少矛盾된 點이 잇는것 잣다. 按컨대이 年齡에 制限은 授田에 對한 規定이 안이다. 國家賦役에 對한 制限인듯 하니, 그러고 보면 授田은 結局能力 잇는 夫婦에 잇슴이 明白하다.

(未完)

